

전기스토브 및 사이너지 디스플레이 품목 에너지효율 분야 Scope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 신청 승인 통보(주식회사 아이씨알)

1. 관련 근거

-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 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제6조(효율관리시험기관의 지정 등)
- 다.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778(2025.7.14.)호

2. 주식회사 아이씨알의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 신청에 따라 동 사의 시험능력 등을 확인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지정 신청을 승인합니다.

○ 승인 품목 : 전기스토브, 사이너지디스플레이. 이상 2품목. 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



수신자 주식회사 아이씨알,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전기스토브 품목 적용 범위

28. 전기스토브

1. 적용범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500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스토브에 한한다.

다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a) 냉방 및 난방 겸용 기기
- b) 발열체가 공기를 직접 가열하지 않는 방식
- c) 건물 구조 내에 설치되어 있는 난방기
- d) 중앙 난방 시스템
- e) 공기 덕트에 접속된 난방기
- f) 벽지, 카펫 또는 유연성 발열체를 포함하는 커튼
- g) 축열식 난방기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품목 적용 범위

42.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1. 적용범위

외부장치로부터 입력단자를 통해 전달받은 정보를 디스플레이 스크린으로 출력 가능하게 하는 디스플레이 제품으로 아래 사양을 충족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 (1) 가시화면 대각선 길이가 30.48cm이상, 154.94cm이하인 제품
- (2)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며, 개인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는 상점, 백화점, 식당, 박물관, 호텔, 공항, 회의실, 교실 등과 같은 장소에서 사용되는 제품
- (3) 주로 SI(System Integrator)업체로 공급되는 제품으로 Video Wall 또는 멀티비전에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제품. 텔레비전 튜너가 내장되어 있지 않는 제품에 한함

단, 가정용 일반모니터 또는 텔레비전수상기로 판매되는 제품, 디스플레이가 주목적이 아닌 부가목적으로 내장된 제품, LED전광판, 배터리로만 동작되는 제품, 터치스크린 적용 제품, 실외공간에 설치되는 제품(통상 휘도 $1,000\text{cd/m}^2$ 이상)은 제외.

☎ 문의처

안전평가센터 / 양영준 책임연구원

T. 070-5083-2631 / yangyj@icrqa.com